

부산광역시사하구지명위원회조례증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1. 12. 4-----사하구청장
- 나. 회 부 일 자 : 2001. 12. 4
- 다. 상 정 일 자 : 제98회 사하구의회(임사회)  
제1차 총무위원회(2001. 12. 26)원안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조치승 총무과장)

가. 제안이유

우리구 지명위원회의 운영은 측량법에 의거 운영되고 있으나 업무처리와 관련이 적은 총무과에서 담당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등 위원회 운영에 혼란이 있어, 업무처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많은 부서로 담당부서를 조정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기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지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와 서기를 각각 “총무과장” 에서 “지적과장” 으로, “행정담당주사” 를 “지적담당주사” 로 함(안 제2 조제4항)

3. 검토의견

이번 조례개정은 우리구 지명의 제정, 변경 기타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구성 운영하고 있는 지명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현재는 업무처리와 관련이 적은 총무과에서

담당하도록 업무분장이 되어 있으나, 업무내용상 직접적으로 관련이 많은 지적과로 업무분장을 조정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보이며 이미 관련부서간에 합의도 된 사항이므로 개정요구 조례안과 같이 통과시켜 운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